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74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: 별도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제명의 개정 및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
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음주청정지역”과 “음주청정구역”을 같은 용어로 정비(안 제3조 제1항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(안 제3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음주청정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학교정화구역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	행
	<p>제3조(음주청정지역 지정 등) ①</p> <p>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<u>음주청정구역</u>으로 지정하거나 변경·추가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강보라
연 락 처	2627 - 2673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0.05.12 조례 제61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피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2. “절주(節酒)”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.
3. “음주청정지역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와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·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음주청정지역 지정 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·추가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
2. 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
3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
4.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5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·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

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,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가 무상 제공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금주·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)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와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관·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관·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청회 등)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여 음주정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과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,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지원 등)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,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제614호, 2010.05.1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: 교육환경법)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36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·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정·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1.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(移轉)하게 된 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2.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

3.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칙 <제18636호, 2021. 12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